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6일

당하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석	최 *석 1961-06-09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(당하동)	직권말소 2024-11-06
권 *숙	권 *숙 1965-02-15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(당하동)	직권말소 2024-11-06